

의안번호	2216737
의 퇴 인	김동아의원
회 답 일	2026.4.10.
추계번호	26D0840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(운영위원회 구성)	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1항) - 위원수를 현재 11명에서 10명으로 변경하고,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원장을 위원에서 제외	의무규정
2	안 제45조의2(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)	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함	의무규정
	안 제45조의3(계정의 구분)	기금은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증계정, 제55조의2에 따른 자활지원계정 및 제55조의6에 따른 자산형성지원계정으로 구분함	의무규정
3	안 제55조의6(자산형성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)	서민금융안정기금에 자산형성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정부의 출연금, 자산계정의 운용수익금, 그 밖에 자산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함	의무규정
4	안 제45조의5(기금의 회계 및 결산)	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하며(제4항),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음(제5항)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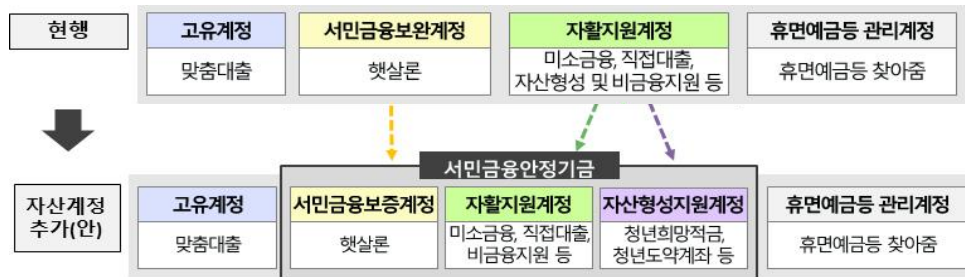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	미대상: 회의참석수당 지급 대상 인원은 변동 없음
2	안 제45조의2(서민금융안정기금의 설치)	미대상: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보증계정(現 서민금융보완계정) 및 자활지원계정을 편입하는 것이므로, 추가제정소요는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	안 제45조의3(계정의 구분)	
3	안 제55조의6(자산형성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)	제3호: 자산형성지원계정에서 수행하는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내용 및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며, 자산계정 조성과 관련한 정부의 출연금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함
4	안 제45조의5(기금의 회계 및 결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서민금융보증계정(現 서민금융보완계정)과 자활지원계정을 편입하고, 자산형성지원계정을 기금 내에 신설함으로써,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호의2,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6까지, 제55조의6부터 제55조의7까지)
- 안 제42조제1호의2에서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보증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보증계정으로의 전출 근거를 마련함
 - 안 제45조의5제5항¹⁾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
 - 안 제45조의6²⁾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
 - 안 제55조의6³⁾에서는 서민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에 자산형성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정부의 출연금, 자산계정의 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함

[그림 1]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에 따른 계정 구조 변화



자료: 서민금융진흥원

- 1) 제45조의5(기금의 회계 및 결산) ⑤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.
- 2) 제45조의6(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) ① 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제46조에 따른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.
②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.
- 3) 제55조의6(자산형성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) ① 서민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에 자산형성지원계정(이하 “자산계정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② 자산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.
 1. 정부의 출연금
 2. 자산계정의 운용수익금
 3. 그 밖에 자산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

- 현행법 제47조⁴⁾와 제55조의²⁵⁾는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의 출연금을 규정하고 있고, 최근 5년간 정부출연금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서민금융진흥원 계정별 정부출연금 현황: 2021~2025년

(단위: 억원)

계정	구분	상품명	2021	2022	2023	2024	2025
서민금융보완	복권기금	근로자햇살론	2,080	2,005	1,675	1,670	1,657
	일반회계	햇살론15	—	—	—	900	900
		최저신용자 특례보증	—	480	280	560	925
	소계		2,080	2,485	1,955	3,130	3,482
자활지원	복권기금	햇살론유스	590	360	450	450	456
	일반회계	청년희망적금	—	476	3,602	1,657	—
		청년도약계좌	—	—	3,676	3,677	3,465
	소계		590	836	7,728	5,784	3,921
합계			2,670	3,321	9,683	8,914	7,403

자료: 서민금융진흥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

- 개정안 제55조의6에 따라 자산형성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 출연금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안 제45조의5제4항과 제5항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는 정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금융회사 출연금 등 민간재원의 규모와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, 금리인하, 자산형성지원 사업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야, 손실금의 발생 여부와 규모, 손실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규모, 자산형성지원계정에 대한 정부출연금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임
- 따라서 현시점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손실 여부, 정부의 손실보전 출연금 규모, 신설되는 계정에 지원될 정부출연금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

4) 제47조(보완계정의 조성)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
2. ~ 8. (생략)

5) 제55조의2(자활지원계정의 설치 및 조성) ② 자활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
2. ~ 8. (생략)

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